

Q & A

안전인증소식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업소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을 저장하는 냉동용 쇼케이스의 정격 소비전력은 220V 1100W로 1KW를 초과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이 수입 판매가 가능한지요?

Answer

냉동용 쇼케이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품목인 전기냉장·냉동기기에 해당되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소비전력이 1,100W인 쇼케이스의 안전인증대상 여부는 동 제품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제시되어야 정확한 인증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페렛스토브로서 친환경난방기구이며 원료는 톱밥농축액(페렛)을 이용하며 난방을 하는 원리이며, 점화시에는 전기를 이용하여 점화시키고 제품안에 모터를 이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구조인데, 수입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문의하신 페렛(톱밥을 농축시켜서 만든 연료)을 이용한 “난방기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